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 상품 설명서

[ISA 중개형 주요제도]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란?

ISA는 펀드, ELS,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 관리하여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비과세+저율분리과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유형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되며, 3가지 계약 형태 중 한가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오니, 가입하시기 전 ISA 계약 유형과 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유형	주요 운용 방법
중개형	위탁매매계좌 형태로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
신탁형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 운용 지시대로 운용
일임형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운용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 상품 설명

1)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거주자(단, 만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

2) 가입 유형 및 유형별 필요 서류(거주자 기준)

구분	가입요건	필요 서류
일반형	만19세 이상	-
	만15~19세 미만	직전년도 근로소득 0
서민형	만19세 이상	근로소득 5천만원,
	만15~19세 미만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
농어민	만19세 이상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
	만15~19세 미만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서민형 가입 후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 받을 경우, 일반형으로 전환됩니다.

※ 부적격 확인시 세제혜택 소멸 및 세제 혜택분은 추징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3) 투자권유준칙 등

- 투자권유준칙, 대면녹취, 숙려제도 등은 기존 계좌들과 동일하게 적용

4) 거래 가능 상품

- 예탁금,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B/DLB, ETN 등 포함), 국내 상장 주식, RP 등

5) 의무가입기간

- 3년 이상(연장 가능)

6)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2천만원 X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4년)]

7) 중도인출

- 납입 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인출 가능
※ 중도 인출 가능금액 계산시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세금금액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 중도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만큼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8) 수수료

- 가입,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음
- 편입 금융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는 별도로 부과
- 주식 매매 수수료는 현행과 동일
※ 홈페이지(www.MyAsset.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 참조

9) 만기 및 해지

구분	내용
만기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일의 3개월전부터 계약 만기일 전일까지 만기 연장 가능 - 만기연장의 시작일은 신청일이 아닌 기존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부터 산정 -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연장 시 일반형 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 연장 후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 적용 -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 대상자일 경우,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 추징
만기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가입기간이(3년) 만료되었으나 만기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 계좌내 상품을 계약 만기일부터 즉시 환매•매도 필요 - 세제 혜택은 상품별 환매•매도 금액 입금일 또는 만기일 경과 후 30일 중

	<p>빠른 날(세제혜택만료일)로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금융투자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상품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에서 제외(일반과세)
중도 해지 (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가입기간(3년) 이전의 해지(인출) 또는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 -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 단, 의무 보유기간 3년 이후 연장 계약의 잔존 만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까지 세제혜택을 부여
특별 중도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사유로 만기일 이전에 해지 시, 만기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 <p>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등</p>

10) 계좌 이전

- 기존 가입계좌에서 타사의 같은 유형 또는 다른 유형의 ISA로 이전 가능합니다.
- 계좌 이전을 하는 경우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며,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좌 이전은 현금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편입자산의 환매 및 현금화 이후 이전이 가능 (일부 금액만 이전은 불가)

11) 손익통산

- 각 금융상품 과표를 계좌 해지일까지 이연하여 합산
 - ①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손실을 차감
 - ② '①'에서 남은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
 - ③ '②'에서 남은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 하는 순서로 진행
- 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 ①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② 파생결합증권(ELB,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 ③ ETF, ETN : 과표차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작은 값
 - ④ 국내 상장 주식 : 양도 차손

12) 과세 특례 사항

- 가) 계좌 가입 기간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부여
- 200만원(서민형,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 비과세
 - 200만원(서민형, 농어민은 400만원) 초과 순소득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ISA 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추가 세제혜택 가능

나) 세제혜택 제외

- 의무가입기간 내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
-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시점 또는 특별해지시점에 환매 매도되지 않은 재산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 손익통산 및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미부여

13) 유의사항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 등의 경우에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좌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와의 위탁매매 또는 매매 계약을 통해 고객이 직접 해당 계좌를 운용합니다.
- 이 계좌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됩니다.
-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 불가합니다.
-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손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 이 계좌는 계좌만기일 이후 입금, 계좌이전, 청약, 매수 등이 불가하며 세제혜택만료일 익일부터 출금이 불가합니다.
- 세제혜택만료일 이후 출금을 원하시면 계좌 해지 후 처리 가능합니다.
- 이 계좌는 계좌해지일에 이연된 세금이 일괄 원천징수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좌 내 편입된 금융상품 중 관계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당사는 본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 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가입하시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1588-26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yasset.com)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및 금융투자협회(☎02-2003-9421~3)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 8. 13 제정]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